

##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정안

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”를 “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1조의2 중 “의사록과 함께”를 “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”로 한다.

(별표)의 5. 중 가.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6), (7), (14), (17)을 각각 삭제하고, (18)의 적용법규는 자본시장법 제56조제6항을 56조 제7항으로 수정한다.

(별표)의 5. 중 바.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2)의 (나) 및 (3)의 (나)를 각각 삭제한다

(별표)의 5. 중 차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) 과태료 부과(5천만원 이하에 한함) 및 징수 관련 사항

(별표)의 33. 중 바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(5천만원 이하에 한함)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(별표)의 52. 중 라.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라.를 삭제한다

부 칙(2021. . .)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의결서 작성 등)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<u>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</u>,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의결서 작성 등)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<u>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하며</u>, ----- -----.</p>
<p>제11조의2(안건의 공개)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의사록과 함께</u>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의2(안건의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<u>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</u>----- -----.</p>

(별 표)

#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·구 조문 대비표

##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

위 임 사 항		관
현 행	개 정 안	현 행
5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가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(6)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·시정명령의 공고 (7)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내용의 공고 가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(14)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예비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가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(17)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인정 가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(18) (생략) 바. 종합금융회사·자금중개회사·명의개사대행회사 등 (2) 자금중개회사 관련사항 (나) 자금중개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	5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 <삭제>  <삭제>  <삭제>  가.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(18) (현행과 같음)  <삭제>	<삭제>  <삭제>  <삭제> 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」  <삭제>

위 입 사 항		관
현 행	개 정 안	현 행
<p>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           바. 종합금융회사·자금중개회사·명의개사            대행회사 등            (3) 단기금융회사 관련사항            (나) 단기금융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          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          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          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        있는지에 대한 결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33.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           관련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차.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            (1). 과태료 부과(5천만원 이하) 관련            사항</p> <p>33.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           관련사항</p> <p>바. 서민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(5천만원            이하에 한함) 및 징수에 관한 사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
<p>52.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</p> <p>라.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            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            절차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        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</p>	<p>52.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